장애인 교육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

장애인은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은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는 장애인 교육을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교육 1
1. 장애인 교육 보호 4
1.1. 장애인 교육권 4
1.1.1.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4
2.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7
2.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7
2.1.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7
2.1.2.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9
2.1.3.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10
2.2.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11
2.2.1. 특수교육 교육과정 11
2.2.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12
3. 영유아 장애인 교육 16
3.1.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16
3.1.1. 특수교육 및 보육 16
3.2.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17
3.2.1. 특수교육 방법 17
3.2.2. 교육비 등 지원 18
4.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20
4.1.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20
4.1.1.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20
4.1.2. 교육비 등 지원 22
4.2. 성인 대상 교육 등 23
4.2.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23
4.2.2.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25
5. 교육차별 금지 등 28
5.1.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28
5.1.1. 교육차별 금지 및 제재 28
5.1.2. 교육차별 구제신청 28

1. 장애인 교육 보호

1.1. 장애인 교육권

1.1.1.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금지

장애인 교육의 개념

"장애인 교육"이란?

▪ “장애인 교육”이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교육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구분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 장애인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제2항).

구분	내용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등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장애인 교육시설』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및 면제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이 콘텐츠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면제·유예 및 재취학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본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Q.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
> A.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입학 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7-0214, 2017. 6. 26.).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교육기회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업시간의 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본문).

※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단서).

> ※ 그 밖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교육차별 금지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 대상 및 과정

2.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등

2.1.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 대상자"란?

▪ “특수교육 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구분	선정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해서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해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및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선별검사의 결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가 심한 경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과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

-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1항·제2항).

※ 이 경우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4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2.1.2.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장애 선별검사

교육감 등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2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본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단서).

> ※ 장애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방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4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2.1.3.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장소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며,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재배치

▪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과 협의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3항).

※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2조).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2.2.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2.2.1.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편성

▪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

특수교육 방법

▪ 특수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제7호·제8호, 제21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구분	내용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순회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해야 함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및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참조).

- 가족상담
- 부모교육
- 양육상담
- 보호자 교육
-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위의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자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전단 참조).

※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후단).

> **Q. 아이가 신체적 제약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과 더불어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데요. 물리치료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
> A. 치료지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 및 학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의 보조 역할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교수학습 활동
- 신변처리

- 급식
- 교내외 활동
- 등·하교 등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 교육감은 위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통학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참조).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숙사 지원 서비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전단).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정보제공 서비스

▪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의료지원 서비스

▪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함)
- 튜브영양공급
-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 그 밖에 교육감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위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3. 영유아 장애인 교육

3.1.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3.1.1. 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 **※ 서울특별시의 장애영아교실**
>
> 서울지역의 장애영아교실은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지원	√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수업형태	√ 센터 방문교육 √ 통신교육 √ 체험교육 √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특수교육 무상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및 308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영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시: 634,000원 √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한도액

▪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294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 283면).

- 보육료 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 가족관계증명서

3.2.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3.2.1. 특수교육 방법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등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장애유아의 특수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 및 운영됩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4면).

- 유아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
-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음
-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
-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
-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
- 교사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되도록 함
- 시・도교육청에서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 유치원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5면).

-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함
-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함
-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 구성함
-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함
-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함
- 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운동 및 적응행동 등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함
- 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유치원에서의 경험이 확장되도록 함

> ※ 그 밖에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유아는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 다만, 장애유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294면 참조).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유아 장애인 교육-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 교육

4.1.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

4.1.1.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장애 초·중·고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

초등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 12. 22.), 22면 및 45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및 영어 ※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및 즐거운 생활로 함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 다만, 1·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함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중학생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 장애가 있는 중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25면 및 47면 참조).

구분	내용
공통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및 선택[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및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교과(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및 선택(재활, 여가활용,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및 보건 등의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고등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28면 및 49면 참조).

구분	내용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 보통 교과 · 보통 교과의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및 교양으로 함 ·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및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함 √전문 교과 · 전문 교과의 교과(군)는 국가직무능력표준등을 고려하여 경영금융, 보건복지,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미용, 관광레저, 식품조리, 건축토목,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의류,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환경안전소방, 농림축산, 수산해운, 융복합지식 재산 과목으로 함 · 전문 교과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전공 실무 과목으로 구분 함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및 진로 활동으로 함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 교과(군)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및 선택(재활, 여가활용,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및 보건 등의 과목으로 함)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및 진로 활동 · 일상생활 활동: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4.1.2. 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취학연령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

※ 다만,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 6세 이상 12세까지의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아동: 6세 이상 8세까지의 아동

▪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 다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말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장애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 기준(재원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인 경우 미지원)에 따라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1면 및 312면).

▪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이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12면).

-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별도 배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동 보육료의 50%(317,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유아 장애인 교육-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특수교육 및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성인 대상 교육 등

4.2.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제공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에 따른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등을 말함)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및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취학편의 지원
- 정보접근 지원

  ※ 대학의 장은 정보접근 지원을 위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시각장애인을 위해 영상물의 화면 장면 및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함)을 위해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 청각장애인등을 위해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및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Q.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7413 확정판결).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지원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장애가 있는 대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 및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2항 참조).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
  -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
  -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2.2.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이란?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

평생교육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 ※ 평생교육 학습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란?

▪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말합니다(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성인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2호·제3호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평생교육 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평생교육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장애인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위 서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용되는 서식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은 해당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서식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참조).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1호·제2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 그 밖에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http://www.lll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차별 금지 등

5.1.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5.1.1. 교육차별 금지 및 제재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 등

학교 등에서의 교육차별 금지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교육차별에 대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제1호·제2호).

-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제2호·제4호·제5호).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사람
-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은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
-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을 한 사람

5.1.2. 교육차별 구제신청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의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 학교의 배치
- 부당한 차별

Q.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차별판단 기준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따라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따라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그러한 광고(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에 대해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이 경우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행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괴롭힘 등"이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및 통보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이 경우 심사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4항).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5항).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6항).

대학에서의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한 심사청구

▪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 제공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Q1. 특별지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설치하나요?

A1. 특별지원위원회는 대학의 장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및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Q2. 특별지원위원회는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나요?

A2.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및 통보

▪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이 경우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5항).

▪ 대학의 장,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6항).